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6. 11 (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7. 6. 20(수)

다. 상정일자 : 2007. 6. 20(수) 제13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조례특위

2. 제 안 이 유

가. 2005년 12월 31일「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7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설치, 임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법·부당한 조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함

3. 주 요 골 자

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 선발 기준(안 제4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 범위(안 제5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부여 (안 제7조)

라. 고충민원 대상 지정(안 제13조)

마.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기간(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안 제29조)

아.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37조 내지 제42조)

자.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무처리(안 제43조 내지 제45조)

차.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안 제46조 및 제47조)

4. 검 토 결 과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 및 2006.4.19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고충민원처리·세무상담·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리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 선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 안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을 부여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 대상 지정하였고

○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기간을

○ 안 제29조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을

○ 안 제37조 내지 제42조에서는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에 대한 사무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6조 및 제47조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 하고 있음.

다. 검토결과

○ 납세자보호관 등 설치·운영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경력 3년 이상 납세자보호담당 각각 1인을 세무부서외의 부서에 설치하여 세무상담·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불합리한 지방세정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납세자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과세처분 중지명령

권, 과세처분 시정 소명요구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의 권한을 두어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 또는 처분이 있거나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도록 한 조치는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 또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토록 하여 납세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 민원인 신청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 및 부당이익반환청구기간 내로 하고 처리기한은 20일,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게 하였으며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회시 등은 7일내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은 개최 5일전 통보토록 하고 결정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의 구속력을 강화한 조치로 사료되며

○ 조문 구성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